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2005. 1. 27)으로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(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)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함.

2. 주요골자

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(제3조) 삭제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2항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5. 1. 27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회의 일수를 조정 하므로써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킴 으로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정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